



NEWSLETTER

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매매 활동 및 상품
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관한 「상법」 및 「대외무역관리
법」의 세부 규정을 정하는 정부령 제342/2026/NĐ-CP호

웹사이트

<https://hankuklawfirm.com>

전화번호

0942-339-063

KakaoTalk

HANKUKLAWFIRM



수출입 권리

수출 가능한 물품:

- 베트남에서 구매한 물품
- 기업이 직접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생산한 물품
-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

조건:

- 국제적으로 수출이 금지·일시 중단·제한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고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

유통 권리

도매 및 소매 유통:

- 베트남에서 생산·가공된 물품
-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

조건:

- 조건부 사업 분야의 경우, 기업은 해당 전문 법규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

사업허가가 필요한 활동

- 소매 유통권(일부 특정 품목 제외)
- 제한 품목의 수입 및 도매 유통권
- 물류 서비스 제공(베트남이 시장 개방을 약속한 일부 세부 분야 제외)
- 물품 임대업(금융리스 및 운전원이 포함된 건설장비 임대 제외)
- 무역촉진 서비스 제공(광고 서비스 제외)
- 상업 중개 서비스 제공
-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, 소셜커머스 또는 통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·운영
- 상품 및 서비스 입찰 주관





경제적 수요 심사(ENT) 미적용

두 번째 소매점부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경제적 수요 심사(ENT)가 적용되지 않음

- +) 매장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
- +) 쇼핑몰 내에 위치한 경우
- +) 편의점 또는 미니슈퍼마켓이 아닌 경우
- +) 투자자가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에서 ENT 요건을 폐지한 국가 출신인 경우
(예: CPTPP/EVFTA 가입국 투자자)

→ 그동안 베트남에서 대형 소매점 개점을 기다려 온 외국계 소매업체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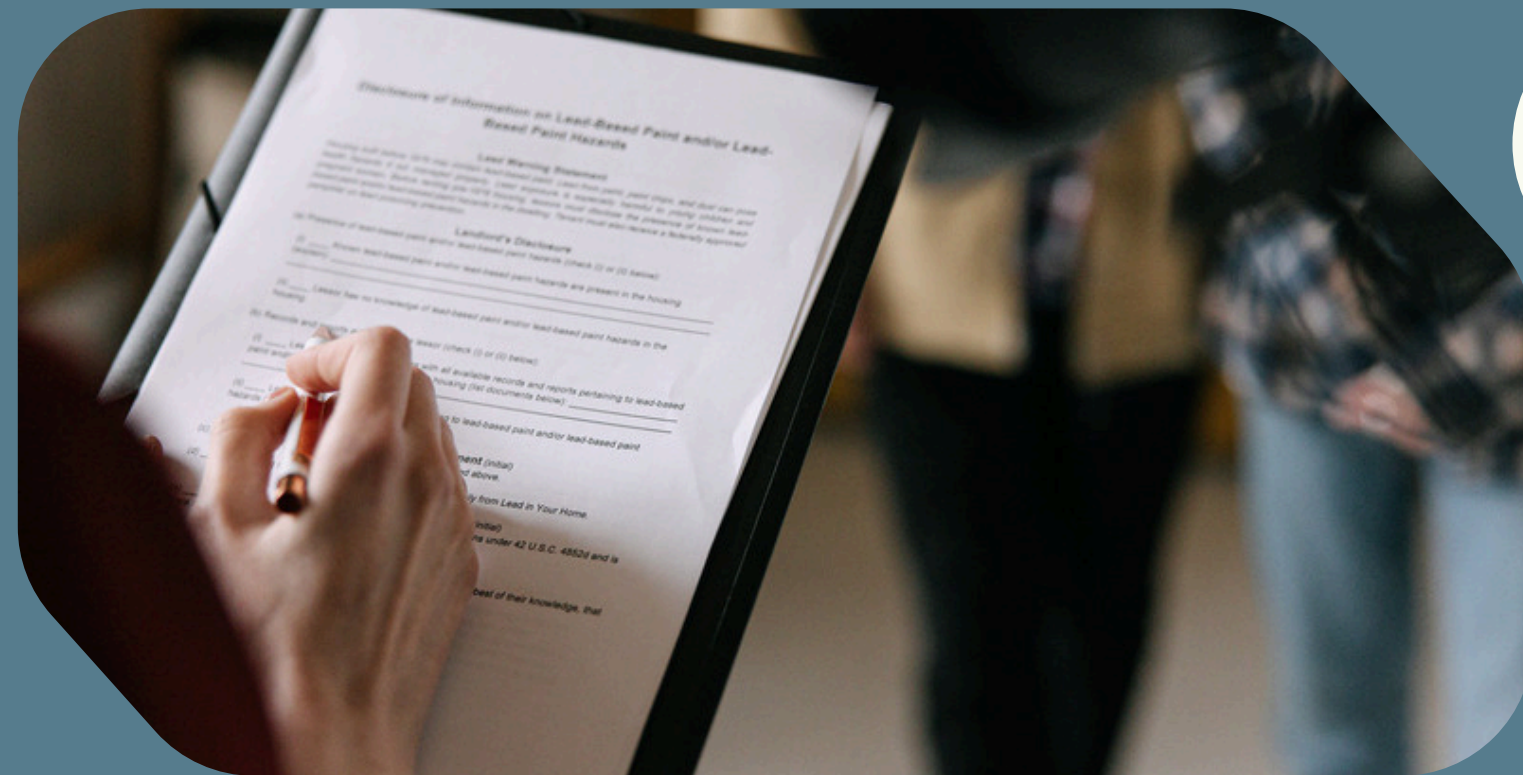


소매점포의 입지 관련 요건

-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설립·운영된 경우,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함.
- 소매점포의 입지는 다음 각 분야의 현행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함: (i) 토지; (ii) 도시계획·용도계획; (iii) 투자; (iv) 건설; (v) 화재 예방 및 소방; (vi) 교통 안전; (vii) 환경 위생·보호.

→ 상기 (i)~(vii)의 7개 법률 분야를 포괄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. 시행령 342호는 소매점포의 입지 요건을 기존의 단순한 “관련 계획과의 적합성”에서 벗어나, 여러 전문 분야의 관련 법령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유의사항: 시행령 342호는 실제로 “완전히 준수”했는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또한 동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서류만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.



영향받는 지리적 시장 지역의 적용 범위 결 정을 위한 기준 면적



영향받는 지리적 시장지역에 적용되는 행정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5,000m²의 기준 면적을 도입함:

- 소매점포 < 5,000m² → 코뮌/프엉(Commune/Ward) 단위;
- 소매점포 ≥ 5,000m² → 성(省) 단위.

→ 새롭게 도입된 5,000m² 기준은 영향받는 지리적 시장지역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, ENT 심사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

국가안보 심사

사업허가증 및 소매점포 설립허가증 발급 기관은 다음의 경우 국가안보 관련 사항에 대해 공안부(Ministry of Public Security)와 국방부(Ministry of National Defense) 양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:

- 베트남이 적용하는 국제조약상 시장개방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는 투자자가 포함된 일부 사업허가 신청;
-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, 전자상거래 소셜 네트워크 또는 통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외국인 지배 운영자;
-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소매 체인:
 - 500㎡ 미만의 매장을 100개 보유한 경우 및/또는
 - 500㎡ 이상 3,000㎡ 미만의 매장을 50개 보유한 경우 및/또는
 - 3,000㎡ 이상의 매장을 30개 보유한 경우.

→ 이러한 요건은 이번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.

실무적으로 국가안보 심사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, 관련 허가 신청을 계획할 때 해당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
감사합니다

342호 시행령은 베트남 내 소매업 진출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, 특히 CPTPP 및 EVFTA와 같은 신세대 무역협정 회원국 출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,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요건들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

 info@hankuklawfirm.com

 0942 339 063

 1D Nguyen Duy, Gia Dinh, HCMC